

‘고용보험법’ 여성에게겐 공염불

10%만 적용대상··시간제·계절노동자는 아예 ‘치외법권’

이병학 기자

·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여성계에서는 여성 고용을 안정시키고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특히 여성계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변노동력으로 밀려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얻어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중의 여성노동자 관련 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여성계가 제기하는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여성 직업훈련의 부실, 모성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성계는 실업급여의 경우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전체의 62.7%를 차지(한국여성개발원 94년 여성관련통계자료)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런 수준의 적용범위는 불과 10% 정도에 그치



주변노동력으로 밀려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는 것이다.

국민대 이광택 교수(법학)는 “시간제 노동자들과 계절적·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 등을 법적용에서 배제한 것은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이기를 포기하고 사보험의 논리에 서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노동자 대상 직업훈련이나 사양화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전직훈련을 거의 하지않아 여성고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유도장치를 마련하고 고용보험법내 직업훈련규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여성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과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여성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18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심포지엄에서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적용대상범위 확대문제, 실업급여수준의 향상, 고용정보전산망의 확충, 육아휴직 사용자의 소득보전 등은 제도가 굳어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사회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여성관련 조항에 여성노동자 등 여성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